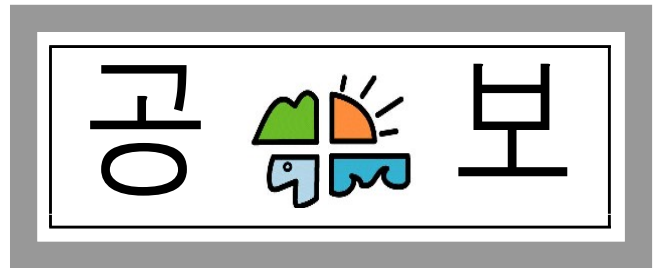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41호 2020년 1월 10일(금)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2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 2-1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9

공 고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10
- 2020년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연서) 주민수 공표 12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5
-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17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아시아신탁(주) 대표 배일규가 시행하는 속초시 조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속 초 시 장

1. 사업명칭 : 속초시 조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 당 초 : (주)서미개발 대표 홍성분
 - 변 경 : 아시아신탁(주) 대표 배일규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15 외 73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분양주택	○ 사업면적 - 당 초 : 34,981.00㎡ - 변 경 : 35,056.00㎡ ○ 대지면적 - 당 초 : 26,973.00㎡ - 변 경 : 27,023.00㎡ ○ 건축연면적 : 92,474.45㎡ ○ 건설규모 : 아파트 2/16~29층 6개동 578세대 외 부대·복리 시설	195,817,789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19.11.01. ~ 2022.05.01.(예정)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7.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033-639-277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

<붙임1>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7	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34,981	증) 75	35,056	

1.1.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면적(m ²)	결 정 (변 경) 사 유
변경	37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35,056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1.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4,981	증) 75	35,056	100.0	
주거지역	소계	34,019	증) 73	34,092	97.3	
	제2종일반주거지역	34,019	증) 73	34,092	97.3	
녹지지역	소계	962	증) 2	964	2.7	
	생산녹지지역	534	감) 2	532	1.5	
	자연녹지지역	428	증) 4	432	1.2	

2.1.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m ²)	결 정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4,092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 적 변경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532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32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1. 도로(면적변경)

3.1.1. 도로 총괄표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기정	4	650 (2,109)	8,008 (25,706)	—	—	—	2	216 (289)	1,967 (3,034)	2	434 (1,820)	6,041 (22,672)
	변경	4	650 (2,109)	8,033 (25,731)	—	—	—	2	216 (289)	1,989 (3,056)	2	434 (1,820)	6,044 (22,675)
중로	기정	3	440 (1,899)	6,159 (23,857)	—	—	—	1	6 (79)	118 (1,185)	2	434 (1,820)	6,041 (22,672)
	변경	3	440 (1,899)	6,162 (23,860)	—	—	—	1	6 (79)	118 (1,185)	2	434 (1,820)	6,044 (22,675)
소로	기정	1	210	1,849	—	—	—	1	210	1,849	—	—	—
	변경	1	210	1,871	—	—	—	1	210	1,871	—	—	—

※ 1) () 안 숫자는 중로 2-25호선과 중로 3-6호선의 총연장 및 총면적에 대한 수치임

- 2) 중로 2-25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중로 3-6호선 차선체계 변경으로 도로연장 축소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총 연장 79m 중 6m / 총 면적 1,185m² 중 118m²)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 3) 중로 3-6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차선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도로폭원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총 연장 1,510m 중 124m / 총 면적 18,447m² 중 1,816m²)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 4) 소로 기정 면적의 경우 기존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속초시고시 제2019-51호)」의 도로총괄표 면적에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 기재함(당초 1,805m² ⇒ 1,849m²)

3.1.2.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5	15	보조 간선도 로	6 (79)	조양69-2전 중로3-6	조양79도 대로3-1	일반도 로	청초천	2007. 11. 2 (강고 제2007-236호)	
기정	중로	3	6	12~15	보조 간선도 로	124 (1,510)	조양547-2 도 중로1-8	노학1268도 중로1-23	일반도 로	청초천	1976. 3. 27 (건고 제37호)	
기정	중로	3	33	12~18	보조 간선도 로	310	조양387-13 임 소로2-231	조양400-5 도 중로3-6	일반도 로	속초상 업 고등학 교	1992. 10. 9 (강고 제92-113호)	
기정	소로	2	231	8.5	국지도 로	210	조양460-1 도 소로1-21	조양387-13 임 중로3-33	일반도 로		2019. 6. 17 (속고 제2019-49호)	

※ 1) 연장의 () 안 숫자는 해당 도로의 전체 총연장이며 변경내용의 연장은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분만 명기함

2)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지적분할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도로 연장은 변경없음

3.1.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3-6	중로 3-6	•면적 증가 - 연장 : 124m(1,510m) 변경없음 - 폭원 : 12~15m 변경없음 - 면적 : 1,807㎡(18,438㎡) → 1,816㎡(18,447㎡)(증 9㎡)	•지적분할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중로 3-33	중로 3-33	•면적 감소 - 연장 : 310m 변경없음 - 폭원 : 12~18m 변경없음 - 면적 : 4,234㎡ → 4,228㎡(감 6㎡)	•지적분할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소로 2-231	소로 2-231	•면적 증가 - 연장 : 210m 변경없음 - 폭원 : 8.5m 변경없음 - 면적 : 1,849㎡ → 1,871㎡(증 22㎡)	•지적분할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중로 3-6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차선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도로폭원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총 연장 1,510m 중 124m / 총 면적 18,447㎡ 중 1,816㎡)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4.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1.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가구번호와 동일	A1	27,023	조양동 415번지 일원	26,973	증) 50	27,023	공동주택용지

4.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4.2.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결정내용	비 고
-	A1	용도	허용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 구체적인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심의시 결정	
		형 태		
		색 채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부대복리시설 제외	결정도 참조

5.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

5.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5.1.1. 보행 및 차량 진출입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	단지 내 보행동선	•주 보행동선으로부터 보조보행동선 유도
차량동선 및 주차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진출입 불허
	단지 내 차량동선 권장	•단지 내 진입도로와 이면도로로 차량동선 유도

※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 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을 말함

※ 주차 출입방향이 표시된 변 중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구간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 2-1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 2-1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월 6일
속 초 시 장

-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교통 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1	15	집 산 도로	1,419	소로2-94 조양동1450-2대	중로3-12 청호동550-9제	일반 도로	2012.4.19. (속고 제2012-21호)	선형 변경
변경	중로	2	11	15	집 산 도로	1,419	소로2-94 조양동1450-2대	중로3-12 청호동550-9제	일반 도로	2012.4.19. (속고 제2012-21호)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2-11	중로2-11	◦ 선형변경	◦ 급회전 구간 선형조정 및 관광시설물제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 일부 변경 (속초해수욕장내 관광테마시설 부지 기반 확보)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공고 합니다.

2020년 01월 06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변경)
2.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0. 01. 10.~ 01. 24.(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허가(신고)번호 (건축허가일) 노학동 455-6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2018-건축디자인과-신축허가-39 (2018.04.04.)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속초시 노학동	455-6	임	3,307	493	김혁, 주수진		건축주 : 김혁, 주수진

5. 공고방법 :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문의사항 : 속초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33-639-2769)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2020년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연서) 주민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규정에 의한 2020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 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2020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 수,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2020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및 청구 연서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속 초 시 장

1.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9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청구권자 총수 (A-B)	청구 서명인수	청구권자 비율
계	주민등록	조례 외국인				
69,195	69,101	94	62	69,133	5,318명 이상	총수의 1/13

2.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가. 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서명인수 (총수의 15/100이상)	서명 읍·면·동수	동별 최소 서명인수		
			구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69,123명	10,369명 이상	3개 이상	영랑동	4,302	646
			동명동	3,525	529
			금호동	5,741	692
			교동	8,531	692
			노학동	18,130	692
			조양동	21,897	692
			청호동	3,984	598
			대포동	3,013	452

나. 시의원(지역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 총수	주민수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서명인수 (총수의 20/100이상)	서명 읍·면·동수	동별 최소 서명인수		
				읍·면·동명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속초시 가선거구	26,083	5,217	2개 이상	영랑동	4,302	261
				동명동	3,525	261
				금호동	5,741	261
				교동	8,531	261
				청호동	3,984	261
속초시 나선거구	43,040	8,608	1개 이상	노학동	18,130	431
				조양동	21,897	431
				대포동	3,013	431

3.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및 청구 연서주민수

19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연서대상 주민총수 (A-B)	청구 서명인수	청구권자 비율
계	주민등록	3년경과등록 외국인				
69,185	69,101	84	62	69,123	1,383명 이상	총수의 1/50이상

4. 기타사항

위 공표 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639-21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0년 01월 07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0. 01. 10.~ 01. 24.(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허가(신고)번호 (건축허가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속초시 노학동	715-32	전	378	10	박호순	노학동 715-32번지 외 1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2019-건축과-신축신고-62 (2019.11.20..)	건축주 : 김분희

5. 공고방법 :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문의사항 : 속초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33-639-2769)

위치도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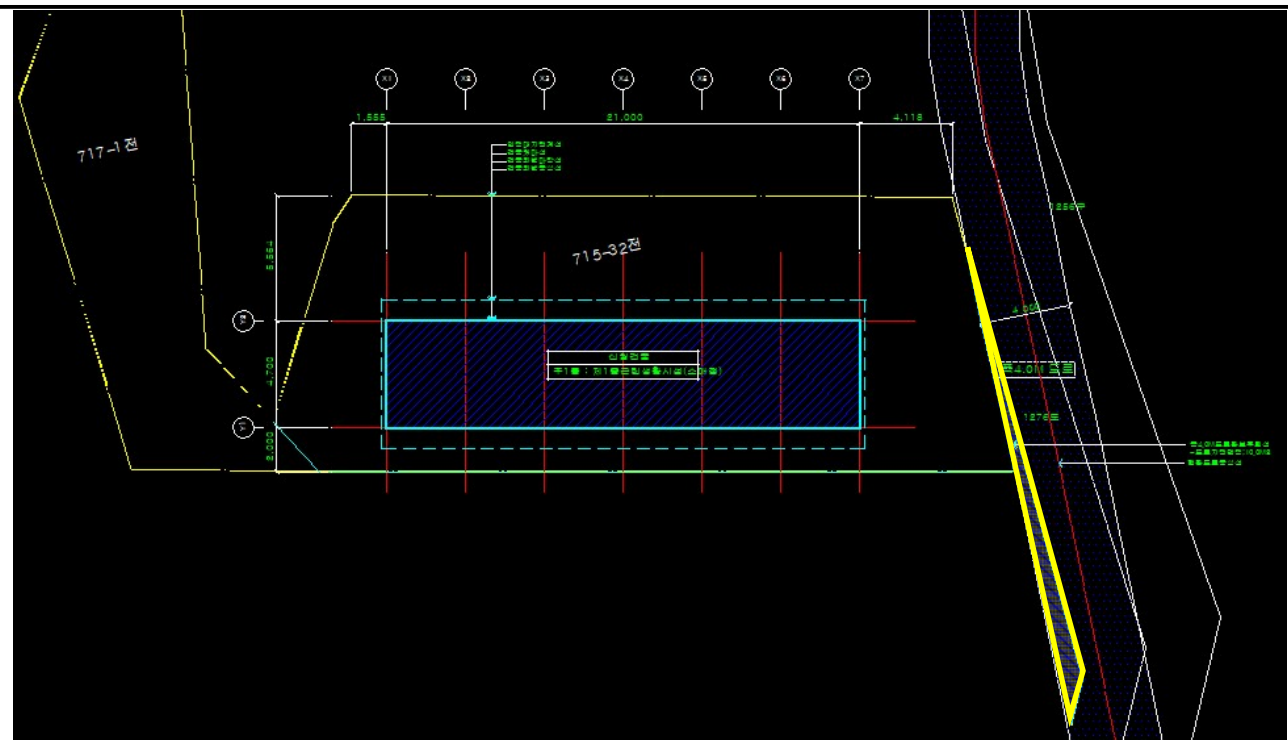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현황도

축척

NONE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2020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

속 초 시 장

1. 지원대상

○ 대상단지 : 총 142개 단지 / 26,500세대

- 사용검사일 후 10년 미만 단지 : 보안등 전기요금
-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 : 보안등 전기요금, 시설보수

※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는 지원 제외(속초시공동주택지원조례 제3조)

구 분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합계		142	26,500	21	5,539	121	20,961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계	103	25,967	15	5,461	88	20,506
	아파트	78	24,693	13	5,337	65	19,356
	연립주택	25	1,274	2	124	23	1,150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소계	39	533	6	78	33	455
	아파트	3	73	1	19	3	54
	연립주택	36	460	5	59	30	401

2. 지원금액

○ 2020년 예산액 : 360백만원

- 보안등 전기요금 : 60백만원(민간경상보조, 307-02)
- 시설물 유지보수 : 300백만원(민간자본보조, 402-01)

3. 지원기준

규 모(세 대 수)	지원비율(%)	지원상한액
50세대 미만	사업비의 90%이하	5백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이하	1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이하	1천5백만원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사업비의 50%이하	3천만원

※ 총사업비 : 지원금액+자부담금액

4. 지원항목

- 가.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 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 다. 경로당 유지보수
- 라. 단지내 보·차도(주차장 포함) 등의 유지보수
- 마. 단지 내 공용부분의 상·하수도(저수조 포함) 유지보수 및 준설
- 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 사.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 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
- 자.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건축법」 제35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 차.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 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 타. 그 밖에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5. 분야별 지원기준

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 노후도에 따라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 추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보안등의 전기요금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전년도 전기요금의 월별금액의 합계×90%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 시장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월/W당 37.5원)× 12월×보안등 등수×90%

다. 경로당 유지보수

○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

라. 단지내 보·차도(주차장 포함) 등의 유지보수

○ 단지내 보·차도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주차장을 말한다.

마. 단지 내 공용부분의 상·하수도(저수조 포함) 유지보수 및 준설

○ 상·하수도시설 및 저수조는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

○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가 예상되거나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등

6. 세부추진일정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 2020. 1. 10.

- 나. 지원신청서 접수 : 2020. 1. 17. ~ 2. 17.
- 다. 현지조사 : 2020. 2. 18. ~ 2. 25.
- 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020. 3월 중
- 마. 공동주택지원대상 결정 통보 : 2020. 3월 중
- 바.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 3월 ~ 11월
- 사.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완료 : 2020. 12월중

7. 지원신청

가.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2020. 1. 17. ~ 2. 17.

나. 신청자격자

-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단지는 사업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
-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입주자가 연명·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으로 신청

다. 제출처 : 속초시청 건축과 주택팀

라. 신청시 제출서류

- 1)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류
(지원신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반서류)
- 3) 사업계획서(아래의 사항을 기재함)
 - 가)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 나) 사업의 목적과 내용
 - 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라) 자기자본 부담액
 - 마) 지원 사업기간
 - 바)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 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단지 도면, 사진 등 관련 서류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속초시청 건축과 주택팀 (☎ 033-639-2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호]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요(목적, 내용, 사업기간)	총소요예산/ 자기자본부담액	비 고
계			
기 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장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서 내역서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